##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우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83

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 김우영·조인철·송재봉

황명선 · 김동아 · 윤종군

양문석 · 김성환 · 박민규

오세희 • 김남희 • 김문수

최기상 • 이재강 • 김 현

김 유·차지호·염태영

조계원 의원(19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, 적금, 보험금 등의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"OO페이", "OO머니" 등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출연 또는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규정이없음.

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

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,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5조의2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(이하 "선불전자지급수단"이라 한다)을 발행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(이하 "선불전자금융업자등"이라 한다)의 출연금
- ③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잔액(이하 "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"이라 한다)을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.
- ④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출연하기 전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의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동의의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_1 -n	
현 행 	개 정 안
제55조의2(자활지원계정의 설치	제55조의2(자활지원계정의 설치
및 조성) ① (생 략)	및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	②
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의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
	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
	급수단(이하 "선불전자지급수
	단"이라 한다)을 발행하는 같
	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
	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
	자금융업자(이하 "선불전자금
	융업자등"이라 한다)의 출연
	- 금
2. ~ 8. (생 략)	 2. ~ 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소멸
	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
	단의 미사용잔액(이하 "선불전
	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"이라
	한다)을 자활지원계정에 출연
	할 수 있다.
<신 설>	<u> </u>
<u> </u>	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

<신 설>

미사용잔액을 출연하기 전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 의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 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동의의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